

규약

2018. 2. 13.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선 언

우리 선원근로대중은 해·수산업의 주체이며,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의 조상은 일찍이 대해를 정복하고 항해기술을 개발하여 해양개척에 나섰으며, 세계문화의 흡수와 교역을 통하여 이 나라의 문화 창달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고, 우리들의 높은 운항기술과 노동정신은 전세계에 널리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과학문명이 극 초현대화 되어 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원근로대중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대우는 후진적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깃발아래 강철같이 단결하여 새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고 경제건설의 역군으로써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며, 산업평화를 지향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의 자유민주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건전한 노동운동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 령

1. 우리는 해·수산업의 주체이며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임에 높은 자긍심을 갖는다.
2.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통하여 동지애를 드높인다.
3. 우리는 노동운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추구한다.
4. 우리는 건전한 노동운동으로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5. 우리는 건전한 노동정신으로 노사협력과 산업평화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국가경제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민주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규 약

2018. 2. 5. 제정

2018. 2. 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이 조직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함)이라 칭하고 약칭은 [선원노련]이라 한다.

②연맹의 영어 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F.K.S.U)

제2조(사무소) ①연맹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연맹은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법인)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목적) 연맹은 선언, 강령의 구현과 가맹조합간의 조직과 유대를 강화하여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활동) 연맹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을 행한다.

1. 해상산업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가맹조합 상호간의 유대강화로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2. 가맹조합의 지도육성과 조합이념 및 조합 활동의 계몽과 홍보에 관한 사업
3. 해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훈련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민주적 노동조합이념 및 진취적 해양 고취사상을 도모하는 사업

4. 국내 및 국외의 민주우방 노동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국제운수노련(I.T.F)과의 긴밀한 제휴로써 가맹조합의 조합원 및 그 가족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후생 사업
 5. 가맹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한 단체교섭을 대행하는 활동
 6. 조합 재산의 매매, 임대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7.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선원의 고충처리, 취업알선, 의견제시 사업
 8. 기타 연맹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해산) 연맹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산인으로 하여금 청산업무를 관장케 하고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토록 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대상) 연맹의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해운업, 수산업 및 그 관련 산업과 내수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제8조(단체가입) ①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국제운수노련의 회원단체가 된다.

②연맹은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연맹은 가입된 단체가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가입과 의무금

제9조(가입과 탈퇴) ①규약 제7조에 규정한 조직대상이 본 규약에 정하는 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함으로서 가입된다.

②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은 당해조합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동을 증명하는 탈퇴 회의록을 첨부하여 연맹에 탈퇴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명) 연맹은 다음의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가맹조합을 제명한다.

1. 1년이상 규약 제11조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규약 제50조의 징계에 의해 제명결의 되었을 때
3. 제4조에 위반하여 가맹조합이 타 연합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제11조(의무금과 특별회비) 연맹의 의무금과 특별회비는 당해 조합원 인당 정액제로 하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의 조정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권리) 연맹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규약에 따라 연맹이 경영관리하는 사업과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규약에 따라 참석하게 되는 각종 회의에서 동등한 제안권,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 가맹조합 및 조합원은 연맹에 대해 건의할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부당한 권익 또는 권리 침해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맹에 고충을 제시할 수 있다.
4. 가맹조합 및 조합원은 규약에 의하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5.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맹과 가맹조합의 전임직원 및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 1호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 제한) 연맹은 본 규약 제50조(징계)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가맹조합에 대하여 전 제12조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14조(의무) 가맹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선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정해진 제규정과 연맹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를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
2. 연맹의 소정 기관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또한 연맹의 제반활동에 대해 일정수의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의 가능한 협력을 수행할 의무

3.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내 납부할 의무
4. 가맹조합내의 주요한 활동, 행사의 상황, 조직 활동 기타 각종 조사활동 등에 대하여 연맹에 보고할 의무
5. 규약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과 사업에 적극 협력할 의무
6. 항시 부단한 노력으로 연맹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7.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협정 결과를 연맹에 14일 이내 보고할 의무
8.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 및 개최 결과를 보고할 의무
9. 연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할 의무
10. 기타 주요한 사항

제5장 회의와 기관

제1절 회의의 통칙

제15조(회의의 성립과 표결) 연맹의 각종 회의는 관계법과 본 규약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특별결의) 다음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제정 또는 개정
2. 임원의 해임
3.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표결) 회의의 표결 중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한다.

1. 노동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2. 출석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5. 가맹조합의 징계 또는 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때

제17조의2(위원장 선거의 특례) ①위원장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선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재투표에서 동수의 찬성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기로 한다.

제18조(표결의 효력) 각 기관의 결의는 상급기관에서 부결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제19조(서기 및 회의록 확인위원) 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기록서기와 회의록 확인위원을 지명하여 회의 구성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의록) 회의록은 의장과 서기 및 회의록 확인위원의 서명날

인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21조(통칙의 준용) 본 장의 규정은 연맹의 모든 회의에 준용한다.

제22조(기관) 연맹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선거인대회
3. 중앙위원회
4. 의장단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분쟁조정위원회
7. 각종 전문위원회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23조(전국대의원대회) ①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중으로 한다.

②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가맹조합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24조(소집공고)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은 늦어도 대회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전국대의원대회는 가맹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전국대의원의 배정기준과 임기) ①전국대의원수의 배정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의 10월말 현재를 기산하여 전 3년간 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금의 전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한 현황을 근거로 12월중에 배정하되 다음의 각호의 1에 한한다.

1. 연맹의 전국대의원 배정은 가맹조합의 조합원 3백명 단위로 1명씩 배정하고, 단수 151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전 제1호 이외에 연맹의 모든 가맹조합에는 전국대의원 1명을 추가로 기본 배정한다.

②집행부는 전국대의원의 배정이 완료되면 가맹조합에 대의원수를 즉시 통보하고 연맹 기관지에 공고한다.

③전 1항의 가맹조합 의무금 납부액이 전전년도에 비하여 5%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 배정인원에 변동이 없는 가맹조합은 제외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⑤제1항의 납부기간 내에 의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된다.

제27조(기능) 전국대의원대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부위원장 보선 및 회계감사 선출, 탄핵 또는 불신임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쟁의기금, 복지기금, 고정자산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노총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연맹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징계 및 결함에 관한 사항
9.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10. 중앙위원 선출
11. 가맹조합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의2(대의원대회의 운영 및 관리) 대의원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절 선거인대회

제27조의3(기능 및 구성) 선거인대회는 규약에서 정한 임원 선출을 위한 대회로서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준용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매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7조의4(소집 및 공고) 선거인대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대회개최 1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준용규정) 선거인대회와 관련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28조(구성과 정원) ① 중앙위원회는 연맹의 임원(회계감사 제외)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위원의 정원은 조합원 600명당 1명으로 산정한다. 단, 600명 이상 가맹조합의 선출직 중앙위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600명 이상 1,500명 미만 1명
2. 1,5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3. 3,000명 이상 4,500명 미만 3명
4. 4,500명 이상 6,000명 미만 4명
5. 6,000명 이상 가맹조합은 상기방식으로 배정한다.

② 가맹노동조합별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노동조합이 추천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해운과 수산 동수로 배정한다. 단, 동수가 안 될 경우에는 전 제1항에서 정한 정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추가 배정하여 동수로 한다.

제29조(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자격이 유지된다. 단, 가맹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가맹조합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직이 상실되었을 경우,

중앙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30조(소집) ①정기중앙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임시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의장단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1조(기능)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개정안의 심의 및 규약 해석권
2. 제규정의 제정 및 폐회
3. 사무소의 신설, 분할, 재편성
4. 예비비 지출의 승인
5. 자금의 차입 및 대출승인
6. 의무금의 결정 및 가맹조합 대여금 승인
7. 활동계획의 수정, 보완
8. 가맹조합의 징계발의
9.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및 임시중앙위원회 소집요청
10. 분쟁조정위원회, 각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의 설치 및 위원의 인준
11. 연맹 2급 이상 직원의 인준
12. 연맹 고문의 추대
13.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14.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15.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6. 지역 또는 분야별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17.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시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②중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규약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절 의장단회

제32조(구성) 의장단은 본 연맹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3조(회의 및 기능) 의장단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에 대한 집행방침의 수립
2. 주요 사업계획의 실시에 관한 방침의 수립
3. 정책 및 재산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직원의 인사(징계포함)노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
6.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의 결정
7. 정치기능에 관한 사항
8.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포상에 관한 사항
10. 가맹조합의 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연맹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제6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본 연맹의 직제상 2급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회의 및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로부터의 수입사항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2. 본 연맹의 사업계획 및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3.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상정할 의안 및 제보고에 관한 사항의 협의
4. 기타 본 연맹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제7절 분쟁조정위원회

제36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14조제9호에 따라 조정 신청된 사안을 조정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8절 지도위원 및 고문

제37조(지도위원, 자문위원 및 고문) 본 연맹에 지도위원,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그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9절 복지사업위원회

제38조(기능) 복지사업위원회는 본 연맹 장학사업, 재산관리 및 복지사업을 집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10절 산 하 기 구

제39조(산하기구의 설치) 본 연맹 산하에 선원정책교육연구소, 해운협의회와 수산협의회 및 부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와 지역단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임 원

제40조(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상임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2명
4. 회계감사 6명

제41조(자격) ① 연맹의 임원자격은 가맹조합의 조합원으로 한다.

② 임원이 가맹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 연맹의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상임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출신 산업을 달리하여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해운·수산 동수로 구성하며, 가맹조합의 대표자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맹의 부위원장직을 상실한다.

제42조(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위원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본 규정에 따라 연맹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각 기관의 의결에 따른 업무집행과 조직 통제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한다.
2. 규약에 따라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연맹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연맹이 체결하는 단체협약 및 일체의 공식 문서와 업무서류 기타 제계약 서류의 서명인이 된다.
4.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운영하며, 적어도 6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 내용과 회계감사 결과를 가맹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규약 및 제규정의 절차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6. 전문위원 및 분과위원을 제청한다.
7. 규약에 따라 각 기관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8.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9. 해외 대표단을 파견한다.
10. 노동위원회 및 각종 정책회의에 대표를 파견한다.

11.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비개최기간 중의 규약과 제규정의 해석권을 가진다.
12. 업무집행에 관한 규칙의 제정
13.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조직 전반의 활동 및 결산 보고
14. 기타 규약이 정하는 사항

제42조의2(상임부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상임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산업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의 권한을 가지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사항에 대한 1차 서명인이 된다.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추인한다.
2. 위원장 유고시 규약 제47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부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규약 제47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회계감사의 임무와 권한) 회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산관리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3월에 1회씩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재산관리 및 예산집행 내용을 가맹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3.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의무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된 가맹조합에 대해서는 업무검사(회계감사를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5. 연맹의 대여금 또는 지원금을 사용한 가맹조합에 대하여 신청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거 및 자격심사) 임원의 임후보와 자격심사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정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계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보충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47조(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상임부위원장
2. 부위원장(연장자 순)

제7장 집행기구

제48조(집행기구의 구성) 본 연맹 집행기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다.

제8장 상 별

제49조(표창) 연맹 및 가맹조합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가맹 조합 및 당해 조합원과 조직의 인사에게는 의장단 회의의 자문을 거쳐 표창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공적심사) 표창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1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조합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1차 징계심의를 하여 제52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징계 조치를 결의하고 제3호의 중징계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

1. 규약 및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결의기관에 대하여 모독 및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가맹조합이 연맹을 탈퇴하지 아니한 채 타 연합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5. 조합원 및 가맹조합이 연맹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없이 연맹 및 가맹조합을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 고발, 소송제기 등을 하여 그 결과가 기각, 각하, 무혐의, 무고, 무죄 등을 받는 경우

6. 다른 가맹조합의 임원선거를 비롯한 내부조직에 개입하여 조직분규를 야기하는 등 다른 가맹조합에 위해행위를 하였을 때
7.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른 가맹조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용주와 결탁하여 위해행위나 조직와해 행위를 시도하였을 때
8. 기타 연맹 및 가맹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경우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기한부 권리의 일부정지 또는 전 권리의 정지
3. 체 명

제9장 쟁의지원 및 단체교섭

제53조(쟁의지원) 연맹 산하 가맹조합의 적법한 쟁의에 대해서는 가맹조합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의장단회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단체교섭) 연맹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섭위원을 임명하여 단체교섭을 행하여야 한다.

제10장 회 계

제55조(재정) 연맹의 재정은 가맹조합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특별회비 및 연맹 소유의 재산 및 시설사업에 수득되는 각종 재원으로 한다.

제56조(기금) 연맹의 각종 기금은 별도 적립하고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사업) 연맹의 사업은 승인기관의 결의에 의한 출자 또는 차입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58조(회계의 분류) ①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일반회계는 연맹의 일반 업무 집행에 관한 회계로서 의무금 수입 또는 조합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말하며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처리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나 사업 또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는 것으로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하고 별도 규정에 의한다.

1. 후생기금
2. 국제선원복지사업비
3. 장학사업기금

제59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다음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가집행하고 다음 승인기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회계규정) 회계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1조(준용) 본 규약 및 제규정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8. 2. 5)

제1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의 가맹조합은 합병대의원대회와 동시에 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② 제4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연맹 합병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임원(회계감사 제외)의 임기는 2020년 1월 12일까지로 한다.
- ③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 설립일로부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장단이 중앙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